

연방 치안 법원의 이민 판결 재심

본 정보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정보지는 호주 연방 치안 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 of Australia)—이하 법원으로 지칭-에서 비자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은 이민법령 1958 (*Migration Act 1958*)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들 중 일부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민 시민권부 장관과 난민 재심국 (Refugee Review Tribunal) 위원들과, 이민 재심국 (Migration Review Tribunal) 위원 등입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시 ‘재판 관할권상의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은 판결이 법에 따라 내려진 것이지만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원 판결을 내린 당사자들에게 다시 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장관이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법원은 소송의 본안을 재검토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독자적인 기관인가?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민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과 무관합니다.

누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판결이 불만스러우며 재판 관할권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법정 재판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법정 재판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해당 사건에 보호 비자 판결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청구 시한이 정해져 있는가?

재심 청구는 판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청구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시한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가?

판결 재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재심 청구서 한 부, 그리고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러한 서류는 웹사이트 www.fmc.gov.au나 가까운 법원 등기소 (court registry)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판결권자가 어떤 재판 관할권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선서 진술서에는 주장한 오류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선서 진술서에는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한부를 첨부하고 판결 사유 설명서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은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일단 완전히 작성이 끝나면 청구서와 첨부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확인 도장이 찍힌 청구서와 첨부 서류들의 사본 한부씩을 장관에게 제공하고, 대부분의 경우 판결을 내린 심사국에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문서 송달 (services of documents)라고 합니다.

장관에 대한 문서 송달은 이민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시민권부는 각 대도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웹사이트 www.immi.gov.au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131 88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법원에서 공판 일자와 시간을 배정할 것입니다. 첫 공판일에 법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공판
- 이차나 최종 공판일
- 보류나 잠정(임시) 명령
- 수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

법원에서 최종 공판 전에 즉각적인 공판이나 이차 공판을 열도록 명령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건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 (arguable case)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최종 공판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매 공판 때마다 법정에서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신 발언할 것입니다. 장관대신 보통 대변하는 변호사가 참석하며,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사가 그쪽의 법정 발언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의 불참을 양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흔히 최종 공판이 끝날 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최종 판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해 줄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는 어떠한가?

전화 통역 서비스, 전화 **131 450**번을 통해 법원과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판에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청구서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신청자 부담 비용이 있는가?

청구서를 접수시킬 때 수수료를 내야 하고, 별도로 최종 공판과 관련된 수수료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민 시민권부의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할 경우 보통 이민 시민권부의 법률 비용 부담 할당액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사건 철회가 가능한가?

네, 그렇습니다. 최종 공판일까지 14일이 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가?

재심 청구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 구조 사무소나 지역 사회 법률 센터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 정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에 한할 뿐,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이나 법원에 중재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연방 치안 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에서는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